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

#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 |

구 분	내 용
	<p>법 규정</p> <p>청탁금지법 제 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p>
일반사항	<p>금지사항</p> <p>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됨 ※ 배우자 자신의 사적인 모임 등에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지 않은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이 아님</p>
	<p>제재대상</p> <p>①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②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 제공한 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p>
	<p>제재정도</p> <p>100만원 초과 :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 : 과태료 부과</p>



국민권익위원회

#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 |

구 분	내 용
조치방법	신고의무 공직자들은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
	반환.거부 ① 공직자들은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 표시, 또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도록 해야 함 ②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등 반환 곤란 시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과도한 제재 소지 차단 장치	금지대상 한정 공직자등의 배우자 자신의 직장이나 사적인 모임 등에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무관한 금품등을 받는 것은 금지되지 않음
	제재대상 한정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아니라,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직자등을 제재
	면책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없이 반환·인도·거부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 면책



국민권익위원회

# | 적용대상 배우자의 범위 |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들도  
적용대상인지?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공직자등의 가족 중  
배우자만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공직자등의 부모나 형제자매, 자녀 등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회사에서 공직자 등의  
배우자인 소속 직원에게  
내부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은 허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송년 부부동반 모임에서 제공되는  
공연관람과 식사 등



모든 직원에게 제공되는 명절선물

임직원에게 주는 건강검진 혜택



회사생산 제품 구입시 할인 혜택



추첨을 통해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회사보유 콘도 이용권

coupon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직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공직자등의 배우자 자신의  
사적 모임 등에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 없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받아도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회사동료

배우자가 사립학교  
교사인데,  
민간회사를 다니는  
제가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 동창모임

고교 동창들과 여행을  
가는데, 제주도에 살고  
있는 친구가 숙소와 차량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제 아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인 경우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 거래은행

은행에서 거래실적이  
많은 우수고객에게  
명절선물을 보내는데,  
배우자가 지자체  
공무원인 경우,  
제가 우수고객에 해당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인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없이 제공된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사례1

국립대학 교수인 배우자가 지도하는 대학원생이 저에게 생일선물을 보내온 경우 받아도 될까요?

### 사례2

제가 최근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저희 회사가 물품을 납품하는 지자체의 계약업무 담당자입니다. 회사에서 자체 직원 경조사비 지급 기준을 초과한 50만원을 저에게 주는 경우 받아도 될까요?

### 사례3

배우자가 시청 건축과 인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입니다. 제가 소속된 산악회 회원이 건축허가 신청 중인데, 저에게 20만원 상당의 등산장비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받아도 될까요?

안됩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는  
법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공직자들은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되면  
신고하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저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관내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지인이  
정기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되자 제 아내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온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 신고하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것을 알게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아니라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이 제재받게 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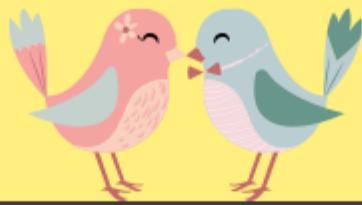
저는 산하기관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제 담당 산하기관에서 제 아내에게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왔습니다.  
평소 알던 사이라 별도로 소속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이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제재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으로  
더욱 깨끗하고 공정해지는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